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4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융투자업규정 제5-1조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으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.

